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090
----------	---------

제안일자 : 2016. 4. 26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조문번호와 조항번호는 현행대로 하고,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는 그 완화조건 및 완화범위 등이 구체화된 후에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제15조와 제16조제2항을 각각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함.
- 안 제26조(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)를 현행대로 함.
- 상위법령의 중복 사항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조문번호와 조항번호를 현행대로 함.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5조는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한다.

안 제15조는 제16조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.

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한다.

안 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제22조”를 “제23조”로 한다.

안 제25조 및 제27조는 각각 제26조 및 제28조로 한다.

안 제26조는 제27조로 하여,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7조(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)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: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\times (1+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\div 원래의 대지면적) 이내
 2. 문화유산 등의 보호, 도시경관, 환경정비,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
-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15조(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) 주민(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법 제18조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.</p>	<p>〈삭제〉</p>	<p>제15조(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)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6조(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</p> <p>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 여건에 따라 ‘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’ 또는 ‘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’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.</p>	<p>제15조(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삭제〉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6조(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<p>④ 시장은 관할구역의 구청장 등에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⑤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시도 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.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시도 시계획위원회----- -----.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7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) (생략)</p>	<p>제16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)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7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)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8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) (생략)</p>	<p>제17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)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8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)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9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) ① 시장은 법 제24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</p>	<p>제18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모니터링·평가체계</u></p>	<p>제19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) (개정안과 같음)</p>

도시재생사업 시행자의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, 사업비 정산내역,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20조(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) (생략)

제21조(주민협의체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

구축을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-----

----- 보고 -----

② -----

--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)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주민협의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제20조(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)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주민협의체) (개정안과 같음)

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,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 등을 시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----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-----.

③ -----의 정산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22조(사업추진협의회) (생략)

제23조(보조 또는 용자)

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 각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.

제21조(사업추진협의회)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재정지원) ① 시

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용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, 범위 및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

제22조(사업추진협의회)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재정지원) (개정

안과 같음)

②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장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.

제23조(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및 지원)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 전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, 그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24조(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및 지원) (개정안과 같음)

	<p>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.</p>	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26조(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) (생략)</p>	<p>제25조(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)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26조(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)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7조(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)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: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×(1+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÷원래의 대지면적) 이내</p> <p>2. 문화유산 등의 보호,</p>	<p>제26조(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 -----</p>	<p>제27조(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) (현행과 같음)</p>

도시경관, 환경정비,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

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.

② -----

-----에도 불구하고 -----
-----.

제28조(시행규칙) (생략)

제27조(시행규칙)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시행규칙)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어린이집, 자전거보관대”를 “자전거보관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공동작업장, 공동판매장”을 “공동판매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, 이 때 주민의 성별·연령·계층·지역적 특성이 반영 되도록 한다.

제16조제5항 중 “시도시계획위원회”를 “시 도시계획위원회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필요할 경우”를 “모니터링·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”로 하고, 같은 항 중 “필요한 경우 보고”를 “보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매년 말일까지”를 “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”로 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”을 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는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 등을 시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”를 “의 정산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23조의 제목 “(보조 또는 용자)”를 “(재정지원)”으로 하고,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용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, 범위 및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제23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.

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4조(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및 지원)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 전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

시행할 수 있으며, 그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5조(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액의 환수) 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보조 또는 용자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.

1. 지원금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
2.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
3. 지원사업의 추진이 법령상·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「지방재정법」,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또는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공동이용시설) 「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3조제5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주민운동시설, 목욕탕, 독서실, 작은도서관, 문고, <u>어린이집, 자전거보관대</u>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<u>공동작업장, 공동판매장, 공동회의실, 공동창고</u>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</p>	<p>제4조(공동이용시설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----- <u>자전거보관대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공동판매장</u>, -----</p> <p>-----</p>
<p>제14조(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주민참여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시장은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4조(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주민참여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, 이 때 주민의 성별·연령·계층·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한다.</u></p>

제16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)

① ~ ④ (생략)

⑤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.

제19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)

① 시장은 법 제24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의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, 사업비 정산내역,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21조(주민협의체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

제16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)

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----- 시 도시계획위원회-----.

제19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)

① -----
----- 모니터링·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-----
----- 보고 -----.

② -----
-----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주민협의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, 주민협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체는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 등을 시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3조(보조 또는 용자)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 각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----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----
-----.

③ -----의 정산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23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용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, 범위 및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장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.

제24조(도시재생사업 지원) ① 시장은 매년 지원사업의 대상 및 지원금액 등을 포함한 사업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.

제25조(지원금액의 환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지원된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1.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2. 「지방재정법」 또는 「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」 등을 위반하였을 때
3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

제24조(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및 지원)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 전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, 그 사업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25조(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액의 환수) 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보조 또는 용자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.

1. 지원금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
2.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
3. 지원사업의 추진이 법령상·사실

4.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

5.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

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「지방재정법」,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또는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.